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45
------------------	------

제출년월일 : 2007.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 우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 안정에 기여코자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식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학교급식지원 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으로 함(안 제4조)
- 식품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되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6조)
- 학교급식지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함(안 제7조,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불임

- 첨 부 1. 입법예고 사본 1부.
2. 학교급식식품지원에관한표준조례안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과-167. 2004.07.27)
3.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내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규정에 의거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산물”과 우수수산물 구입비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식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제5조(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① 시장과 제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산물” 및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유치원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이 종합하여 신청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 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천시 부시장 및 업무관련 본부장·팀장
2. 제천 교육청 업무관련 과장
3. 제천시의회 의원
4. 학부모 대표
5. 교원 대표
6. 영양사 대표
7. 농민대표
8. 시민대표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무상급식의 지원대상, 지원규모에 대한 심의·의결
3.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지원 및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대한 심의·의결
4. 기타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우수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교육장은 식품비지원 학교 급식에 “우수 농산물” 및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지연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도·감독에 불응한 경우에는 식품비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2호], 시행일 2007.1.2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모 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개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란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졸업전 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 공민학교
 3.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이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 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 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24>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⑥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천시 공고 제2006-1652호

제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제 천 시 장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2. 제정이유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에 기여 코자
-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함.

3. 주요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식재료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학교, 「유아교육 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기타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함(안 제4조)
- 식품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되 고등학교,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6조)

- 학교급식지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함 (안 제7, 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1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농업축산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 640-5571 FAX 640-5579 E-mail : pupsoon@okjc.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국무조정실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급식지원 표준조례(안)통보

1. 우리 실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아래 “불임1”과 같이 학교급식지원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이를 소관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재의요구증인 조례와 대법원제소증인 조례에 대한 처리지침을 “불임2”와 같이 통보하니 소관 해당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표준조례안 1부.
2.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제소증인 조례 처리지침 1부. 끝.

국무조정실장

수신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특수교육보건과장), 행정자치부장관(분권지원과장)

전결 07/27

★서기관 정병규 과장 장상진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기획단-167 (2004.07.27.) 접수 분권지원과-1781 (2004.07.27.)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 <http://www.opc.go.kr>
전화 3703-2156 전송 720-1162 / @opc.go.kr / 공개

00시(군·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표준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군·구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구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군·구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시·군·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관련 실국장
2. 시·군·구 교육청 관련국장
3. 시·군·구 의회의원
4. 학부모 단체
5. 교원 단체
6. 영양사 단체
7. 농민단체
8. 시민단체

9.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시·군·구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학교급식지원조례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

[의견제출처 : 충청북도]

입법예고 안	제출의견	검토결과수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규정에 의거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는 급식대상을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 목적규정에서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위임조례임을 명시할 경우 조례안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2호 내지 4호의 경우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급식법」 제4조와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 	<p>제 4조 3, 4호를 삭제하여 상치되는 문제점 해소토록 수정</p>
<p>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제1조와 관련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거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능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나, ○ 제2호의 경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제4호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된 보육시설로 학교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아 급식보조금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제3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모·부자가정 등은 보육료 전액이 면제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간식비, 급식비 등)가 지원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조례에 의거 급식비 지원시 보조금이 2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 요망 ○ 제4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추후 지원범위의 해석을 놓고 논쟁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함. 	<p>제4조(지원대상)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으로 하고 3, 4호를 삭제</p> <p>사유 : 3호의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식 대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어 충북지원의 소지가 있으며 학교급식법 적용에 논쟁의 소지 배제</p> <p>4호는 추후 지원범위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p>

[의견제출처 : 제천교육청]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검토결과수정
<p>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4. 학부모 단체 1인 5. 교원 단체 1인 6. 영양사 단체 1인</p>	<p>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4. 학부모 대표 1인 5. 교원 대표 1인 6. 영양사 대표 1인</p>	심의위원 4호~8호 단체 1인을 대표로 수정
<p>제9조(급식학교 등의 의무)</p> <p>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우수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학교장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9조(지원대상 학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우수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학교급식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매년 학교급식 지원금 사용내역을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p>	수정 필요 없음
	<p>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물류관리, 보급관리 등을 위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2007년도 하반기 시범실시 후 설립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조문 신설 검토